소카 안내서는 일본어나 일본에서의 생활방식,규칙등을 각국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테마별로 한과씩 되어있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청(시민과,국제상담코너), 서비스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각 공공 시설 창구에 부탁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카가 여러분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ガイドブック草加は日本語や日本での暮らし方や決まりなどを、各国語で説明したものです。テーマごとに１シートとなっています。必要なシートを選んで使ってください。市役所（市民課、国際相談コーナー)、各サービスセンターにおいてあります。また、各公共施設窓口に頼んで取り寄せることもできます。
草加が皆さんにとって住みよいまち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국제 상담 코너에서는 자원봉사 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합니다.

国際相談コーナーでは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が情報を提供したり、相談にのります。

월, 수, 금　09:00~17:00
시청 ７층
전화:　922-2970 (직통)
팩스:　927-4955

月・水・金. 9:00am~5:00pm
市役所本庁舎７階
電話.: 922-2970(直通)
ファックス：927-4955
E-mail:　soka-kokusai@juno.ocn.ne.jp

（国際相談コーナーは草加市の事業補助により、市民の立場で「ＮＰＯ法人 Living in Japan」が運営しています。）

作成：草加市　　協力：草加市国際相談コーナー
소카시가 국제상담코너와 협력하여 작성 했습니다.
（令和元年改訂）

項目一覧

A-1	입국시의 수속	入国時の手続き
A-2	외국인등록	住民登録
A-3	**호적제도**	戸籍制度
A-4	인감등록에 관해	印鑑登録について
B-1-1	주택	住宅
B-1-2	이사와 쪼회	引越しと町会
B-1-3	생활기반시설	生活インフラ
B-1-4	쓰레기처리법	ごみの出し方
B-2-1	건강보험에 관해	健康保険について
B-2-2	개호보험제도~	介護保険制度について
B-3	결혼을 하려면	結婚するには
B-4-1	임신부터 출산까지	妊娠から出産
B-4-2	아동의 건강	子どもの健康
B-4-3	자녀양육	子育て
B-5-1	교육	教育
B-5-2	일본어학습	日本語学習
B-6	일본의 세금	日本の税金
B-7	일본에서 일하기	日本で働く
B-8	국민연금,후생연금	国民年金と厚生年金
B-9-1	운전면허	運転免許
B-9-2	자동차,오토바이~	自動車・バイクを所有する
B-9-3	자전거 타기	自転車にのる
B-10	취미, 교양	楽しむ・学ぶ
B-11-1	긴급시의 대응	緊急のときの対応
B-11-2	자연재해에 대비해	自然災害に備えて
C-1	소카시문화,운동시설	草加市内の文化・運動施設
C-2	곤란시의 상담창구	困ったときの相談窓口

가이드북 소카

A-3
호적제도

戸籍制度

＊　このシリーズはやさしい日本語で書かれています。

＊　草加市にお住いの方の情報です。

A-3 호적제도

일본국적 소지자는 호적에 개인의 출생, 사망, 결혼등의 신분관계가 등록됩니다. 외국적의 시민은 호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출생, 사망 또는 결혼, 이혼을 했을 때는 시청 시민과에 신고하십시오. 또 본국정부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1.출생신고

외국국적 아동도 일본국내에서 태어났을 때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14 일이내(출생일포함)에 시청 시민과에 신고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경과체재자로서 60 일간으로 제한된 주민표가 작성되어

개인번호(마이넘버)도 부여 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3 戸籍制度

日本国籍を持っている人は「戸籍」に個人の出生や死亡、結婚などの身分関係が登録されます。外国籍市民は戸籍がありませんが、日本で、出生・死亡また結婚・離婚をしたときは、市役所市民課に届出てください。なお、本国政府にも届出が必要です。

1．出生届

外国籍の子どもも、日本国内で生まれたとき、出産した病院で出生証明書をもらい、１４日以内（生まれた日を入れて）に市役所市民課に届けます。 ＊出生届を出すと経過滞在者として60日を限りとする住民票が作成され、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も付与されます。

この他に、次のような手続きが必要です。また、「B-4-1 妊娠から出産」も参考にしてください。

① 児童手当の申請、国民健康保険（親が加入者のみ）の加入手続き
＊出生後60日以内に在留資格を取得できないと、児童手当、国民健康保険（親が加入者のみ）の資格を失うこともあります。

② 在留資格の取得（出生した日から３０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で行います。）
＊生まれた子どもの住民票（家族全員）を市民課で取って申請すると、子どもの在留カードに住所が記載されます。

③ 旅券の取得（在日大使館又は、領事館）

出生届を行う時、②③の手続きに必要となるため、同時に出生届の記載事項証明書や出生届受理証明書（有料）等を請求して下さい。
詳しくは、出入国在留管理庁、大使館で確認してください。

또「B4-1 임신과 출산」을 참조하십시오.

① 아동 수당 신청, 국민 건강 보험(부모가 가입한 경우만)의 가입수속

＊출생후 60 일이내에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국민 건강 보험(부모가 가입한 경우만)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재류 자격 취득 (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주민표(가족전원)를 시민과에서 발급 받아 신청하면 아이의 재류카드에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③ 여권 취득(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출생신고를 할 때 미리 ②③의 수속시 필요한 서류, 기재사항증명서(記載事項証明書)나 출생수리증명서(出生届受理証明書)(유료)등을 청구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출입국관리국, 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2. 사망신고

2．死亡届

死亡し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７日以内に死亡届（死亡診断書）を市役所市民課に出して手続きします。この他に、次のような①～④の手続きが必要です。

※草加市市民福祉葬

葬儀を行う際にかかる経費の負担が困難な市民に対し、市が経費の一部（基本仕様の葬儀費用のうち５万円を差し引いた金額）を負担します。市の基本仕様により、市の指定葬儀社で行うことが条件です。

希望する場合は、亡くなったら死亡届を出す前に指定業者に連絡してください。

① 在日大使館又は領事館への連絡

② 日本で火葬又は埋葬する場合、埋火葬許可証が必要です。（死亡届を市役所市民課に提出すると発行してもらえます。）

③ １４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へ在留カードを返納します。

④ 在日大使館又は、領事館へ旅券を返納します。遺体を日本で火葬又は埋葬せずに本国に輸送したいときは、上記の手続きのほか、死亡診断書を大使館（領事館）に提出して、遺体輸送に必要な書類の作成を依頼します。詳しいことは、大使館（領事館）に確認してください。

３．婚姻届　「B-３．結婚するには」　を参考にしてください。

４．離婚届

日本の方式によって離婚するときは、離婚届を、居住地の市役所市民課へ出します。詳しいことは、それぞれの大使館（領事館）または、市民課で確認してください。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시청 시민과에 제출하여 수속을 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①~⑤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소카시 시민복지장

장례를 치르는데 드는 경비의 부담이 곤란한 시민에 대해 시가 경비 일부 (기본사양의 장례비용 중 5 만엔을 뺀 금액)를 부담합니다. 시의 기본 사양에 의해 시의 지정 장의사에서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희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망후 사망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지정업자에게 연락하십시오.

① 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

② 일본에서 화장 또는 매장할 경우 매,화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시청 시민과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14 일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離婚後に、住所、名前、在留資格、在留期間などが変わる時は、出入国在留管理庁で変更手続きが必要です。

＊在留資格が「日本人の配偶者等」や「家族滞在」などの人が離婚または死別した場合、その日から 14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に届け出る必要があります。

５．帰化（外国籍市民による日本国籍の取得）

外国籍市民が日本国籍を取ることを、「帰化」といいます。帰化するためには、法務大臣の許可が必要です。詳しいことは、さいたま地方法務局戸籍課（＊平成28 年１月より）まで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６．国籍の選択

外国国籍と日本国籍を持っている人（重国籍者）は、２２歳になるまでに（２０歳になった後で重国籍者になったときから２年以内に）どちらかの国籍を選びます。選ばないでそのままにしておくと、日本国籍を失うことがあります。詳しいことは、さいたま地方法務局戸籍課まで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問い合わせ先》

・市役所 市民課　　電話　048-922-1542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さいたま出張所　電話　048-851-9671
さいたま第２法務総合庁舎１階

・さいたま地方法務局 戸籍課　電話　電話　048-851-1000
さいたま第２法務 総合庁舎 2階　＊相談は予約が必要です。

さいたま第２法務 総合庁舎：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5-12-1
ＪＲ埼京線「与野本町」徒歩10分

④ 재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을 반납합니다. 유해를 일본에서 화장 또는 매장하지 않고 본국으로 수송하고 싶을 경우는 상기의 수속외에 사망진단서를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유해 수송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의뢰합니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십시오.

3. 혼인신고 「B-3 결혼을 하면」을 참고하십시오.

4. 이혼신고

일본 방식에 의해 이혼할 때는 이혼신고를 거주지 시청 시민과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대사관(영사관) 또는 시민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이혼 후에 주소, 이름,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바뀔 때는 출입국관리국에서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나「가족체재」등인 사람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귀화 (외국적 시민의 일본국적 취득)

외국적 시민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호적과 (*2016 년 1 월부터) 에 문의하십시오.

6. 국적의 선택

외국국적과 일본국적의 소지자(이중국적)는 22 세가 되기까지 (20 세가 된 후에 중복국적자가 되었을 때부터 2 년이내에)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일본 국적을 소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이타마 지방 법무국 호적과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시청 시민과 전화 048-922-1542

* 동경 충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 전화 048-851-9671

사이타마켄 사이타마시 츄오쿠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 2 법무종합청사 1 층

JR 사이쿄우선「요노혼쵸역」도보 10 분

*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호적과 전화 048-851-1000

사이타마켄 사이타마시 츄오구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 2 법무 총합 청사